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루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8조 제1항 방송·통신에 의한 원격수업에 따라 실시하는 학부 및 특수대학원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원격수업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8.12.개정),(2024.03.29.개정)

제2조(원격수업 교과목 정의 및 분류)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수업 형태를 말하며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 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024.03.29.개정)

②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 활동의 70%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하며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LMS), 교내·외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하는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 학점교류협약이 이루어진 국내·외 대학의 원격강의시스템, 컨소시엄을 통해 회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공동 원격 강좌의 방식으로 교수 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강의를 포함한다. (2024.03.29.개정)

③ 원격병행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미만을 원격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블렌디드 강좌 : 평가활동을 제외한 교수-학습활동의 30%이상 70% 미만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좌를 의미한다.

2. 보조활용 강좌 : 기존 온라인 콘텐츠 혹은 학기 중 이루어지는 강의를 촬영하는 콘텐츠(이하 강의실촬영 콘텐츠라 함)를 수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강좌를 의미한다.

3. 플립러닝 강좌 : 주제 단위 내에서 온라인 사전학습과 학습자 중심의 심화된 오프라인 학습으로 구성되며 개발과 운영 시 최소 교과목당 8차시 콘텐츠(동영상, PPT 등)로 구성된다. 단 최소 4주 이상 동영상 콘텐츠(마이크로 콘텐츠 포함)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보조활용 강좌 : 기존 온라인 콘텐츠 혹은 학기 중 이루어지는 강의를 촬영하는 콘텐츠(이하 강의실촬영 콘텐츠라 함)를 수업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강좌를 의미한다.

⑥ 플립러닝 강좌 : 주제 단위 내에서 온라인 사전학습과 학습자 중심의 심화된 오프라인 학습으로 구성되며 개발과 운영 시 최소 교과목당 8차시 콘텐츠(동영상, PPT 등)로 구성된다. 단 최소 4주 이상 동영상 콘텐츠(마이크로 콘텐츠 포함)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수업일수 및 이수기준)

- 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및 학칙 제6조에 따라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블록수업, 집중이수제, 계절학기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2021.2.1.개정)
- ② 원격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1시간은 이수기준으로 비동시적 원격수업의 경우 강의콘텐츠 재생시간, 질의·응답 및 온라인 토론시간 등을 종합한 개념이며, 학습시간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 동시적 원격수업의 이수시간은 출석수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비동시적 원격수업 강의콘텐츠 재생시간은 1차시당 25분 이상(1학점 기준)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단, 토론, 프로젝트 기반 원격수업은 25분 미만으로 제작 가능하다.
- ⑤ 원격수업의 경우 법정공휴일, 학교 전체 행사 등은 휴강처리하지 않고 정상수업 진행한다.
- ⑥ 담당 교수는 질의응답 메뉴에 등록된 학생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야 한다.
- ⑦ 학기당 이수가능학점은 일반 교과와 동일하다.
- ⑧ 원격수업 교과에 대한 학생 수업평가는 일반 교과와 동일하게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시수인정 및 강사료)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강의시수와 강사료는 인정한다.

제5조(원격수업의 출석관리 및 평가관리) ① 수강생은 교과목별 강의동영상을 출석인정기간 내에 모두 시청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습활동에 대한 출석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처리한다. (2020.4.29.개정)

- ② 주차별 출석인정기간은 강의 개시 후 2주 이내이며, 출석인정 기간 이후에 수업을 들은 경우 지각으로 처리,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해당 주차의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③ 주차 별 출석 기간 내 접속 기록은 있지만 출석인정시간만큼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④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환산하며, 전체 주차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 ⑤ 원격수업에 대한 공결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취업계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공결을 인정한다. (2020.6.24.개정)
- ⑥ 학생의 성적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및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평가를 시행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의 다면적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 (2024.03.29.개정)
- ⑦ 출결처리는 통합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⑧ 교수자는 강의의 질 관리를 위하여 수강생과 소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020.4.29.개정)
- ⑨ 대리출석을 한 경우 성적을 F로 처리한다. (2020.6.24.개정)

⑩ 원격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대면/비대면, 동시/비동시 방법을 적용하여 학기당 1회 이상 학생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해당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020.8.12.신설),(2024.03.29.개정)

제6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루터미래교육원장으로 하며,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 연구교수, 디아코니아교양대학장, 교학부처장, 매체지원담당(전문가),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2020.05.20.개정),(2020.8.12.개정)

③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로 한다.(2020.05.20.개정),(2020.8.12.개정)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020.8.12.개정)
2. 원격수업 교과목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교과목의 개발 선정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5.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원격수업 교육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 각호에 수반되는 중요사항

제7조(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의 개설 및 폐지 절차) 원격수업 교과목을 개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학과는 편성된 정규 교과목 중에서 원격수업 개설 및 폐지 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해당 위원회 심의와 교학처장의 동의를 거쳐 개설 및 폐지할 수 있다. (2024.03.29.개정)

② (수정) 기존에 운영중인 원격수업 교과목은 그 내용을 목적에 맞게 수정(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수정하고자 하는 교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격수업운영신청서 및 원격수업 수정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05.20.개정),(2024.03.29.개정)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 출석부 관련 사항은 출석수업과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원격수업 교과목은 수업계획서와 강의시간표에 표기하여 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개설된 원격수업 교과의 폐강 및 분반기준은 일반교과와 동일하다.

⑥ (폐지) 기존에 운영중인 원격수업 교과목은 대면수업 전환 등에 의해 폐지될 수 있으며, 폐지하고자 하는 교원은 원격수업 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03.29.신설)

⑦ 수정 및 폐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기존에 운영중인 원격수업 교과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4.03.29.신설)

⑧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30조의1에 따라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며, 재학생이 수강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03.29.신설)

제8조(원격수업운영시스템 및 콘텐츠) ① 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운영 및 학점 취득은 본

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LMS), 교내·외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을 활용하는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 학점교류협약이 이루어진 국내·외 대학의 원격강의시스템, 컨소시엄을 통해 회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공동 원격 강좌로만 운영 가능하다. (2024.03.29.개정)

- ② 운영시스템(LMS)은 학생의 출석 관리, 대리출석 차단시스템, 이용시간 기록, 수강자 개별 접속 기록, 수업 동영상 재생 등 수업에 필요한 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원격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운영시스템(LMS)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강의콘텐츠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가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개발된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 K-OCW 및 K-MOOC 등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를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콘텐츠는 제9조에서 정한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 ⑦ 원격수업의 콘텐츠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콘텐츠 수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교수 등에게 유지·수정·보완·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서 정한 조치 권고를 받은 부서 및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보완·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⑨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본교에 속한다.
- ⑩ 강의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 ⑪ 공개 콘텐츠와 같이 저작권 등의 제반 문제가 없는 경우 주차별 강의 내용의 30% 이내에서 타인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 ①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교학처에서 주관하며, 기타 사항은 본교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원격수업을 위한 기획과 제작, 웹사이트의 관리, 콘텐츠 관리, LMS 온라인 관리, 교수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에서 주관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에서 겸한다. (2020.8.12.개정)

제10조(학점인정) (2024.03.29.개정)

- ① 삭제(2021.8.6.)
- ② 삭제(2021.8.6.)
- ③ 원격수업 교과목 수의 산정 시 개강 이후 수강신청자 부족으로 폐강된 경우에는 비율 계산 시 개설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④ 본교에서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 및 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 모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전공에서 정한 교육과정이나 국가전염병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개설해야 할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021.2.1. 신설), (2021.8.6. 개정)

⑥ 융합전공 내 융합교과목은 자율적으로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2021.8.6. 신설)

제11조(원격수업 지원)

- ① 교내 원격수업의 강의시수는 일반 수업의 수업시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원격수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한다.
- ③ 원격수업을 대상으로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다.
- ④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운영하는 해당 교과목의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4.02.21. 신설)

제12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원격수업 교과목 관련 사항은 교육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③ (2024.03.29.삭제)

제13조(원격수업 교과목 저작권) (2020.8.12.조 신설)

- ①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본교와 공동으로 갖는다.
- ②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본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수자가 이용할 경우 또는 개발한 교수가 본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와 개발교수간 상호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승인을 위한 행정처리는 교수학습역량개발센터를 통하여 진행한다.
- ③ 강의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

제14조(정보보호) ① 원격수업운영시스템상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교수·학습 활동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교수자의 강의 개선을 위하여 분석된 자료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제공하며, 이를 강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운영시스템에 탑재한 모든 콘텐츠의 무단 배포를 금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